성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1년 1월 일
발 의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982호, 2011.6.27,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조정하고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금사용 용도를 새로이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정적립액 의무예치비율 조정 : 종전 30%에서 15%로 하향

-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기금사용 용도 신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 보수·보강
-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보수·보강
-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제75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2) 재난관리기금 조례작성(안) : 도 치수방재과-8428(2011.6.29)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11.8. ~ 2011.11.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30 이상”을 “15이상”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를 “영 제74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보강(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

6. 재난 예보·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의 설치·보수·보강

7.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보수·보강

8.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 제1항제6호”를 “영 제74조제1항마목”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재난관리담당”을 “재난민방위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재난관리과 재난관리담당”을 “건설안전과 재난민방위담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 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 ---------- ---------- ---------- ---------- ---------- 15이상 --------- ---------- ---------- ---------- ---------- ---------- ---------- ---------- ----------. ----------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용도) ------ 영 제74조-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보강(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6. 재난 예보·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의 설치·보수·보강
<신 설>	7.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보수·보강
<신 설>	8.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신 설>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군수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1항마목----------. ---------- ---------- ---------- -----.

현 행	개 정 안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1. (현행과 같음)
1. (생 략)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담당	2. ---------- 재난민방위담당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리과 재난관리담당이 된다.	⑤---------- 건설안전과 재난민방위담당-------.